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 UBS PIMCO 글로벌인컴혼합자산모투자신탁[재간접형]

2. 주요 변경내용
 - 자투자신탁 추가, 기존 자투자신탁 명칭 변경
 - 환헤지 전략 삭제

3. 변경효력발생(예정)일 : 2018. 08. 16

4. 대비표

[집합투자규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 3 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③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으로서 자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나 UBS PIMCO 글로벌인컴혼합자산자투자신탁[재간접형] 2. <추가>	③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으로서 자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나 UBS PIMCO 글로벌인컴혼합자산자투자신탁(H)[재간접형] 2. 하나 UBS PIMCO 글로벌인컴혼합자산자투자신탁(UH)[재간접형]

[변경등록신청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자집합투자기구의 명칭] 하나 UBSPIMCO 글로벌인컴혼합자산자투자신탁[재간접형] <추가>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자집합투자기구의 명칭] 하나 UBSPIMCO 글로벌인컴혼합자산자투자신탁(H)[재간접형] 하나 UBSPIMCO 글로벌인컴혼합자산자투자신탁(UH)[재간접형] (CD166)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18 년 08 월 16 일 - 자투자신탁 추가, 기존 자투자신탁 명칭 변경 - 환헤지 전략 삭제
제 2 부 집합투자기구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생략)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

<table>
<tr><td>에 관한 사항</td><td></td><td></td></tr>
<tr><td>제 2 부
집합투자기구
에 관한 사항</td><td>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 모자형 구조
<table><tr><th>자투자신탁명</th><th>펀드코드</th></tr><tr><td>하나 UBSPIMCO 글로벌인컴혼합자산자투자신탁(H)[재간접형]</td><td>C1327</td></tr></table></td><td>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 모자형 구조
<table><tr><th>자투자신탁명</th><th>펀드코드</th></tr><tr><td>하나 UBSPIMCO 글로벌인컴혼합자산자투자신탁(H)[재간접형]</td><td>C1327</td></tr><tr><td>하나 UBSPIMCO 글로벌인컴혼합자산자투자신탁(UH)[재간접형]</td><td>CD166</td></tr></table></td></tr>
<tr><td>제 2 부
집합투자기구
에 관한 사항</td><td>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나. 위험관리
(2) 환헷지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해외집합투자증권의 표시통화인 미국달러에 대해 통화관련 장내외파생상품 등을 활용하여 환헤지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 그러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해외 집합투자증권은 미국달러 이외의 다양한 통화로 표시된 자산에 투자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미국달러와 해당 통화간의 환율변동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목표 헤지비율 : 외화표시자산의 90% 수준
■ 이 투자신탁은 개방형, 추가형 투자신탁으로 설정, 해지가 빈번하다는 제약조건하에 환헤지를 수행하므로 투자기간 중 발생손익에 대한 환율변동위험을 전적으로 회피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만기와 통화선물 만기의 차이로 rollover 위험 등이 남게 됩니다.</td><td>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나. 위험관리
(2) 환헤지
환헤지 전략을 실시하지 않을 계획이므로 환율변동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의 가치가 변동되는 환율변동 위험에 노출됩니다.</td></tr>
</table>

	※ 환헷지란 선물환 계약 등을 이용하여 펀드의 매수시점과 매도시점의 환율의 변동으로 인한 손실위험을 없애는 것을 뜻합니다. 즉 해외펀드의 대부분은 해외통화로 자산을 편입하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추가적인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헷지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환율이 올라가는 경우 오히려 추가적 이익기회가 상실될 수 있으며 환헤지 계약의 만기 후 재계약을 할 경우 헤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가. 일반위험**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 해외 자산에의 투자는 필연적으로 국내통화와 투자대상국 통화와 간의 환율변동에 노출되게 됩니다. 따라서, 환율변동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가치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헷지 계획에도 불구하고, roll over, NAV 변동, 선물/선도환 시장 변화, 목표비율과 실제비율과의 차이, 환헷지 시행 수준으로 인한 환율 변동 관련위험은 남아있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환율변동위험이 예상하지 못한 경제적인 사건 및 투자대상국가 및 투자대상 국가의 경제적인 제반 사건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가. 일반위험**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 해외 자산에의 투자는 필연적으로 국내통화와 투자대상국 통화와 간의 환율변동에 노출되게 됩니다. 따라서, 환율변동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가치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해외투자로 인한 환율변동 위험 제거를 위한 환헷지 전략은 기본적으로 실시하지 않을 계획이므로 이후 환율변동으로 인한 급격한 신탁재산 가치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투자신탁에서 투자한 증권의 가격상승으로 인한 수익이 발생 하더라도 통화의 가치가 더 크게 하락할 경우 오히려 투자원본의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으며, 투자 증권의 가격하락으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도 해당 통화가치의 하락이 펀드의 손실폭을 더 확대시킬 수도 있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환율변동위험이 예상하지

		못한 경제적인 사건 및 투자대상국가 및 투자대상 국가의 경제적인 제반 사건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 과세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환헤지 거래를 수행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유의사항】 환헤지 거래를 수행하는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원금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환헤지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여전히 과세대상 이익이므로 상황에 따라서는 세금 측면에서 중대하고 불리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 과세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삭제>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생략)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

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변경전 : 하나 UBS PIMCO 글로벌인컴혼합자산자투자신탁[재간접형]
 - 변경후 : 하나 UBS PIMCO 글로벌인컴혼합자산자투자신탁(H)[재간접형]

2. 주요 변경내용
- 환헤지 전략 추가에 따른 펀드명 변경 및 투자대상자산 파생상품 추가, 취득한도 조정 등
- 모투자신탁 환헤지 전략 삭제

3. 변경효력발생(예정)일 : 2018. 08. 16

4. 대비표

[집합투자규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 3 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① 이 투자신탁은 혼합자산투자신탁으로서, 투자신탁의 명칭은 "하나 UBS PIMCO 글로벌인컴혼합자산자투자신탁[재간접형]"으로 한다.	① 이 투자신탁은 혼합자산투자신탁으로서, 투자신탁의 명칭은 "하나 UBS PIMCO 글로벌인컴혼합자산자투자신탁(H)[재간접형]"으로 한다.
제 17 조(투자대상자산 등)	제 1 항 <추가> 제 2 항 <추가>	제 1 항 3. 법 제 5 조제 1 항 내지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외파생상품. 다만, 환율변동으로 인한 투자신탁재산의 위험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통화관련파생상품에 한한다.(이하 "파생상품"이라 한다) 제 2 항 3.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을 말한다) 4. 제 1 호 내지 제 3 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제 18 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1. 제 3 조제 4 항의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90% 이상으로 한다.	1. 제 3 조제 4 항의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80% 이상으로 한다

	2. 제 17 조제 2 항 각호 방법으로의 운용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하로 한다. 다만, 본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량환매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이하의 범위내에서 10%를 초과할 수 있다. <추가>	2. 제 17 조제 2 항 각호 방법으로의 운용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로 한다. 다만, 본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량환매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하의 범위내에서 20%를 초과할 수 있다. 3.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이하로 한다.
제 19 조(운용 및 투자제한)	<추가>	2.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3.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4. 법 시행령 제 80 조제 5 항에서 정하는 적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제 20 조(한도 및 제한의 예외)	<추가>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 18 조제 3 호, 제 19 조제 2 호 내지 제 3 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 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간이투자설명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전략** **2. 투자전략** **[모투자신탁에의 투자]** 하나 UBS PIMCO 글로벌인컴혼합자산모투자신탁[재간접형] - 투자비율 : 90% 이상	**[1] 투자전략** **2. 투자전략** **[모투자신탁에의 투자]** 하나 UBS PIMCO 글로벌인컴혼합자산모투자신탁[재간접형] - 투자비율 : 80% 이상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2. 위험등급** 이 투자신탁은 글로벌 채권, 주택저당증권(MBS),자산유동화증권(ABS) 등에 투자하는 해외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90% 이상을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이하 생략) **3. 위험관리** 이 자투자신탁에서는 환헷지 전략을 실행하지 않고,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하나 UBS PIMCO 글로벌인컴혼합자산모투자신탁[재간접형])에서 환헷지 전략을 실행합니다.	**[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2. 위험등급** 이 투자신탁은 글로벌 채권, 주택저당증권(MBS),자산유동화증권(ABS) 등에 투자하는 해외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80% 이상을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이하 생략, 현행과 동일) **3. 위험관리** -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해외 집합투자증권의 표시통화인 미국달러에 대해 통화관련 장내외파생상품 등을 활용하여 환헤지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해외 집합투자증권은 미국달러 이외의 다양한 통화로 표시된 자산에 투자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미국달러와 해당 통화간의 환율변동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목표 헤지비율 : 외화표시자산(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해외

		집합투자증권)의 90% 수준 - 이 투자신탁은 개방형, 추가형 투자신탁으로 설정, 해지가 빈번하다는 제약조건하에 환헤지를 수행하므로 투자기간 중 발생손익에 대한 환율변동위험을 전적으로 회피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만기와 통화선물 만기의 차이로 rollover 위험 등이 남게 됩니다.

[투자설명서(일괄신고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하나 UBSPIMCO 글로벌인컴혼합자산자투자신탁[재간접형]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하나 UBSPIMCO 글로벌인컴혼합자산자투자신탁(H)[재간접형]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하나 UBSPIMCO 글로벌인컴혼합자산자투자신탁[재간접형]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하나 UBSPIMCO 글로벌인컴혼합자산자투자신탁(H)[재간접형]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18 년 08 월 16 일 - 환헤지 전략 추가에 따른 펀드명 변경 및 투자대상자산 파생상품 추가, 취득한도 조정 등 - 모투자신탁 환헤지 전략 삭제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생략)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

<table>
<tr>
<td>제 2 부
집합투자기구
에 관한 사항</td>
<td>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다. 모자형 구조
이 투자신탁은 법 제 233 조에 의거한 모자형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으로서 '하나 UBS PIMCO 글로벌인컴혼합자산모투자신탁[재간접형]'에 신탁재산의 90% 이상을 투자하는 재간접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table>
<tr><th>투자대상</th><th>투자 비율</th></tr>
<tr><td>하나 UBS PIMCO 글로벌인컴혼합자산모투자신탁[재간접형]</td><td>90% 이상</td></tr>
</table>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하나 UBS PIMCO 글로벌인컴혼합자산모투자신탁[재간접형]
주요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외화자산투자에 따른 환율변동위험은 통화관련 장내외파생상품 등을 통해 환헤지 실행
</td>
<td>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다. 모자형 구조
이 투자신탁은 법 제 233 조에 의거한 모자형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으로서 '하나 UBS PIMCO 글로벌인컴혼합자산모투자신탁[재간접형]'에 신탁재산의 80% 이상을 투자하는 재간접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table>
<tr><th>투자대상</th><th>투자 비율</th></tr>
<tr><td>하나 UBS PIMCO 글로벌인컴혼합자산모투자신탁[재간접형]</td><td>80% 이상</td></tr>
</table>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하나 UBS PIMCO 글로벌인컴혼합자산모투자신탁[재간접형]
주요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포트폴리오 리스크 관리 : 투자대상인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업자 및 펀드매니저의 운용전략의 일관성, 투자전략의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 등
</td>
</tr>
<tr>
<td>제 2 부
집합투자기구
에 관한 사항</td>
<td>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자집합투자기구
(1) 투자대상
<table>
<tr><th>투자대상</th><th>투자비율</th><th>투자대상 내용</th></tr>
<tr><td>하나 UBS PIMCO 글로벌인컴혼합자산모투자신탁[재간접형]</td><td>90%이상</td><td>글로벌 채권(하이일드 및 전환사채 포함), 주택저당증권(MBS), 자산유동화증권(ABS) 등에 투자하는 해외집합투자증권을 주된 투자대상</td></tr>
</table>
</td>
<td>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자집합투자기구
(1) 투자대상
<table>
<tr><th>투자대상</th><th>투자비율</th><th>투자대상 내용</th></tr>
<tr><td>하나 UBS PIMCO 글로벌인컴혼합자산모투자신탁[재간접형]</td><td>80%이상</td><td>글로벌 채권(하이일드 및 전환사채 포함), 주택저당증권(MBS), 자산유동화증권(ABS) 등에 투자하는 해외집합투자증권을 주된 투자대상</td></tr>
</table>
</td>
</tr>
</table>

		자산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
유동성자산	10%이하 (단, 대량환매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는 30%이내)	- 단기대출 (30 일 이내의 금융기관 간 단기자금 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 금융기관 예치(만기 1 년 이내인 상품)

(2) 투자제한

<내용 추가>

		자산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
유동성자산	20%이하 (단, 대량환매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는 40%이내)	- 단기대출 (30 일 이내의 금융기관 간 단기자금 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 금융기관 예치(만기 1 년 이내인 상품) - 환매조건부매수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을 말한다) - 위와 동일하거나 유사 한 것으로서 외국 통화로 표시 된 것
파생상품	10% 이하 (위험평가액 기준)	법 제 5 조제 1 항 내지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외파생상품. 다만, 환율변동으로 인한 투자신탁 재산의 위험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통화관련파생상품에 한한다.

(2) 투자제한

구분	내용
파생상품	-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법 시행령 제 80 조제 5 항에서 정하는 적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 상기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신탁계약서 제 18 조제 3 호, 제 19 조제 2 호 내지 제 3 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 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table><tr><th>투자 대상</th><th>투자 비율</th></tr><tr><td>하나 UBS PIMCO 글로벌인컴혼합자산모투자신탁[재간접형]</td><td>90% 이상</td></tr><tr><td>유동성자산(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td><td>10% 이하</td></tr></table>※ 유동성 자산에의 투자는 대량환매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는 30% 이내의 범위내에서 1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나. 위험관리** 이 자투자신탁에서는 환헷지 전략을 실행하지 않고,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하나 UBS PIMCO 글로벌인컴혼합자산모투자신탁[재간접형])에서 환헷지 전략을 실행합니다.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table><tr><th>투자 대상</th><th>투자 비율</th></tr><tr><td>하나 UBS PIMCO 글로벌인컴혼합자산모투자신탁[재간접형]</td><td>80% 이상</td></tr><tr><td>유동성자산(단기대출, 금융기관에의 예치, 환매조건부매수 등)</td><td>20% 이하</td></tr></table>※ 유동성 자산에의 투자는 대량환매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는 40% 이내의 범위내에서 2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나. 위험관리** -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해외 집합투자증권의 표시통화인 미국달러에 대해 통화관련 장내외파생상품 등을 활용하여 환헤지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해외 집합투자증권은 미국달러 이외의 다양한 통화로 표시된 자산에 투자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미국달러와 해당 통화간의 환율변동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목표 헤지비율 : 외화표시자산(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해외 집합투자증권)의 90% 수준 - 이 투자신탁은 개방형, 추가형 투자신탁으로 설정, 해지가 빈번하다는 제약조건하에 환헤지를 수행하므로 투자기간 중 발생손익에 대한 환율변동위험을 전적으로 회피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만기와 통화선물 만기의 차이로 rollover 위험 등이 남게 됩니다. ※ 환헷지란 선물환 계약 등을 이용하여 펀드의 매수시점과 매도시점의 환율의 변동으로 인한 손실위험을 없애는 것을 뜻합니다. 즉 해외펀드의 대부분은 해외통화로 자산을 편입하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추가적인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헷지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환율이 올라가는 경우 오히려 추가적 이익기회가 상실될 수 있으며 환헤지 계약의 만기 후 재계약을 할 경우 헤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투자신탁의 주요 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 등] 나. 위험관리 (2) 환헷지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해외집합투자증권의 표시통화인 미국달러에 대해 통화관련 장내외파생상품 등을 활용하여 환헤지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 그러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해외집합투자증권은 미국달러 이외의 다양한 통화로 표시된 자산에 투자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미국달러와 해당 통화간의 환율변동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목표 헤지비율 : 외화표시자산의 90% 수준 - 이 투자신탁은 개방형, 추가형 투자신탁으로 설정, 해지가 빈번하다는	**[모투자신탁의 주요 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 등]** 나. 위험관리 환헤지 전략을 실시하지 않을 계획이므로 환율변동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의 가치가 변동되는 환율변동 위험에 노출됩니다.

	제약조건하에 환헤지를 수행하므로 투자기간 중 발생손익에 대한 환율변동위험을 전적으로 회피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만기와 통화선물 만기의 차이로 rollover 위험 등이 남게 됩니다. ※ 환헷지란 선물환 계약 등을 이용하여 펀드의 매수시점과 매도시점의 환율의 변동으로 인한 손실위험을 없애는 것을 뜻합니다. 즉 해외펀드의 대부분은 해외통화로 자산을 편입하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추가적인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헷지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환율이 올라가는 경우 오히려 추가적 이익기회가 상실될 수 있으며 환헤지 계약의 만기 후 재계약을 할 경우 헤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은 글로벌 채권, 주택저당증권(MBS), 자산유동화증권(ABS) 등에 투자하는 해외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90% 이상을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생략)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은 글로벌 채권, 주택저당증권(MBS), 자산유동화증권(ABS) 등에 투자하는 해외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80% 이상을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생략, 현행과 동일)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생략)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